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회
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정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광역시의 정책수립과 시행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시기 및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

- 다. 시장은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 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연1회 이상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마.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및 안 제21조)
- 바.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0(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jbkim8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책에 대하여 실시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인천광역시의 조직, 업무 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시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권고받은 정책개선 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 시장은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연1회 이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제12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법무·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분석평가 추진 및 지원 체계

제20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분석평

가 관련 소속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제8조에 따른 분석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21조(분석평가 교육) ① 시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분석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시민의 참여조성 및 지원)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분석평가 대상)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5조(분석평가 교육) 제18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제5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제12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제13조(분석평가 교육)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출)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분석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의 법령 심사 전
2.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3.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

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제5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2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분석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년도 분석평가 교육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가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출예산 금액이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 김연임